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6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박덕흠 · 서천호 · 조지연

김선교 · 엄태영 · 추경호

김예지 · 김재섭 · 강승규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전자의 과실 없이 버스에서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버스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승객의 피해가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실질적인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해

당 운전자의 향후 취업 및 경력 관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 등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25. 7. 10.).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은 운전자에게 장애의 취업 또는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임.

따라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등은 해당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록정보를 정정·변경·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2.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3.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

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
보를 정정·변경·말소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u>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 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 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 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u> <u>1.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 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u> <u>2.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u> <u>3.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u>

<u><신 설></u> <u>⑤ (생 략)</u>	<u>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u> <u>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u> <u>정하는 경우</u> <u>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u> <u>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u> <u>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u> <u>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u> <u>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u> <u>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u> <u>정·변경·말소하여야 한다.</u> <u>⑦ (현행 제5항과 같음)</u>
---	---